



시 보



제1751호 2026. 7. 27. (월)

고시 · 공고

-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2
- 2026년도 목포시 기간제(의전차량 운전직)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3
-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.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
- 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 19

회람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홍보과 ☎ 061-270-8539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2조제5항 및 「같은법 시행령」 제26조에 따라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7월 27일

목 포 시 장

○ 도로명주소 폐지 내역

구분	종전(지번)주소	도로명주소	고 시 일	폐지 사유
1	죽교동 309-2	목포시 열린길9번길 7-1	2026. 7. 27.	건축물 멸실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313)에 문의 또는 목포시청 홈페이지(www.mokpo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참고사항

-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실제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해당 위치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목포시 기간제근로자(의전차량 운전직) 채용 합격자 공고

2026년도 목포시 의전차량 운전 및 관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제근로자(의전차량 운전직) 채용에 따른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21일

목포시장

1. 최종 합격자 : 1명

- 응시번호 001

2. 합격자 제출서류

- 제출일시 및 장소
 - 일 시 : 2026. 7. 24.(금)까지
 - 장 소 :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서무팀(☎061-270-3231)
- 제출서류
 - 채용결격사유 본인 확인서 1부. (당일 배부 예정)
 - 관련 경력 및 자격 증명서 각 1부.
- 유의사항
 - 합격자 통보 후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채용 취소
 - 반드시 본인이 임용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
 - 지참물 : 신분증, 도장

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.미용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 법 예 고

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.미용비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27.

목 포 시 장

1. 개정이유

- 기존 지류형 이용권 방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용권 배부·정산의 불편과 행정력 부담 증가 문제를 개선하고,
- 전자 바우처 카드 시스템을 도입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간편하고 직관적인 이용 편의를 제공하며,
- 이용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원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지원형태 변경(안 제4조)
 - (기존) 지류 이용권 → (변경) 바우처 카드
- 바우처 카드의 사용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 및 카드 사용 중지 규정(안 제7조)
- 가맹점 등록(안 제8조) 및 준수사항 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- 지원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- 바우처 카드 도입에 따른 관련 규정 및 필요한 사항 등 정비
- 조례 제명 및 조문 자구 정비
- 별지 서식 정비
 - 정비 : 서식명, 작성 내용 등(안 별지 제1호서식 ~ 제6호서식)

3. 전부개정 조례안 : 붙임1

4. 관계법령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9조

5. 관련부서 의견

- 부패영향평가 대상여부(감사실) : 해당없음
- 규제심사 대상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-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여부(여성가족과) : 의견반영
 - 의견 : 별지 제1호서식(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수령명부)에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표기란 신설 제안

6. 예산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6. 7. 27. ~ 2026. 8. 17.

8. 사전협의사항 : 해당없음

9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7일까지 목포시장(노인장애인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82), 직접 방문

다. 의견제출처 : (58613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일로 203,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

10. 기타사항

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(☎ 061-270-888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목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.)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와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원 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 대상) ①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의 지원 대상(이하 “지원 대상”이라 한다.)은 지급 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.

②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.)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.

제3조(지원 대상의 결정 및 관리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·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 지원 대상자의 카드 수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.

②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배우자, 지원 대상의

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, 또는 미혼 단독가구의 경우 형제자매 (이하 “대리인”이라 한다.)가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. 다만,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지원 대상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.

제4조(지원 방법 및 절차) ①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은 시장이 발급한 바우처 카드(이하 “카드”라 한다.)에 의한다.

② 시장은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관할 동장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교부한다.

③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

④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(재)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.

제5조(지급 시기) 시장은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분기별로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. 다만,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제6조(카드의 사용) ① 카드는 제8조에 따라 시에 등록된 목포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·미용업소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한다.)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.

② 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.

③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에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

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사용 중지 등)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.

1. 지원 대상자의 사망, 전출,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. 이 경우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배우자, 직계가족 등으로부터 카드를 지체 없이 반환받아야 한다.
2.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
3.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
제8조(가맹점 등록 등)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.

제9조(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)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, 카드 사용 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
2. 목록 및 이·미용 서비스의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
3.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

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
2.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3.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

4.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

③ 시장은 가맹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, 정산 요금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0조(지원사업비의 정산 등) ① 시장은 목포시 목욕업협회장, 이·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(이하 “목욕업협회장 및 이·미용사회 지부장”이라 한다.) 및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과 「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」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 및 「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사업비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.

③ 시장은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로부터 가맹점별 카드 결제 내역을 제공받아 확인 후, 가맹점에서 신청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.

제11조(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) ① 시장은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고,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고,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2조(카드의 출납관리 등) 시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의 카드 출납대장을 관리하게 하고, 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카드 수령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카드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

리하게 하여야 한다.

제13조(지도·점검) 시장은 가맹점이 지원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·점검을 할 수 있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노인 목욕 및 이·미용권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노인 목욕비 및 아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수령명부

연번	수령일자	카드번호	지원 대상자			수령인				
			성명	생년월일	성별	성명	날인 또는 서명	지원대상자와 관계	연락처	비고

[별지 제2호서식]

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

		카드번호	
구 분	[]재발급([]분실 []훼손 []그 외)		
지급 대상자	성명		생년월일
	연락처		주소
대리 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
	연락처		대상자와의 관계
「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 20 . . . 신청인(대리신청인): (서명 또는 인) 목포시장 귀하			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			
본인은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.			
☐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내역			
항 목	수집목적	보유기간	
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 등	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	5년	
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			
제공받는 기관	제공목적	제공하는 항목	보유기간
「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위탁업체	바우처 카드 제작 및 관리	성명, 생년월일, 연락처, 주소 등	5년
※ 위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	
☒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? (☐ 예 ☐ 아니오)			
20 . . .			
신청인(대리신청인): (서명 또는 인)			
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신청서			
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만일,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		
신청인(대리신청인): (서명 또는 인)			
※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			
(본인 수령) 지급 대상자 신분증			
(대리 수령) 위임장, 지급 대상자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			

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

본인 (위임자)	성명	생년월일
	연락처	주소
대리인 (수임자)	성명	생년월일
	연락처	주소
	위임자와의 관계	위임내용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 권한의 위임
본인(위임자)은 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. 20 년 월 일 위임자(본인): (서명 또는 인) 수임자(대리인): (서명 또는 인) 목포시장 귀하		
※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: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		

[별지 제4호서식]

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

구 분	일 자	제작수량	동	배부수량 (카드번호)	잔 량	비고

[별지 제5호서식]

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수불대장

[illegible]

노인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

구분	[]신규 []변경 []탈퇴			
가맹점 정 보	상 호 명		사업자등록번호	
	주 소			
	전화번호		사업구분	☐ 목욕 ☐ 이·미용
대표자	성 명		휴대전화	
「목포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조례」 제8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(신규·변경·탈퇴)을 신청합니다. ※ 변경·탈퇴사유 : _____ 20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날인) (대표자와의 관계:) 목포시장 귀하				
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				
1.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목적 : 목포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·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. 수집항목 :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.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: 사업수행기간 4. 제3자 정보제공처: 시와 협약한 시스템 운영업체 5.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,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다만,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※ 단,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.				
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20 신 청 인 : (서명 또는 인)				
※ 구비서류 1. 사업자등록증 (사본)·영업신고필증 (사본)·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중 1 2.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3.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				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목포시 노인목욕비 및 이.미용비 지원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

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(안) 입법예고

「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7. 27.

목 포 시 장

1. 개정 이유

-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(국민제안의 처리)를 반영하여 제안 자격을 확대하고, 조례의 용어 및 조문 체계를 정비하여 운영상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- 제안 자격을 ‘시민’에서 ‘목포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’로 확대(안 제1조~제4조, 제6조)
- 제3조(제안의 종류)를 제2조(용어의 정의)에 통합하면서 기존 용어(시민 제안)를 삭제(안 제2조~제3조)
- 제17조(상여금 지급)에서 상여금 지급과 무관한 포상 및 부상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(안 제17조 제5항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

○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

○ 「국민 제안 규정」 제1조, 제2조

6. 관련부서 의견

○ 부패영향평가 (감사실) : 의견없음

○ 규제심사 대상 여부(기획예산과) : 해당없음

○ 성별영향분석평가 (여성가족과) : 의견없음

7. 예산사항 : 해당 없음

8. 입법예고 : 2026. 7. 27. ~ 2026. 8. 18. (22일간)

9. 사전협의(승인) 사항 : 해당없음

10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8월 18일까지 목포시장(기획예산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-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법인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기타 참고사항

나. 의견제출처

- (58613)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을로 203(용당동) 목포시청 기획예산과

다. 제출방법 : 우편, 팩스(061-270-3578), 직접방문 등

11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(<http://www.mokpo.go.kr>)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(☎061-270-36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목포시 (이하 “시”라 한다) 시민과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을 “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시민 또는 공무원”을 “목포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또는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“아이디어제안”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.
5. “실시제안”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.
6. “공모제안”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

제3조를 삭제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시민과”를 “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”로 한다.

제6조 중 “시민과”를 “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”로 한다.

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행정절차법」 제52조의2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에 따라 <u>목포시</u> (이하 “시” 라 한다) 시민과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 이라 한다)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,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.
1. “제안”이란 <u>시민 또는 공무원</u> 이 목포시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, 행정서비스,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	1. ----- <u>목포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(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) 또는 소속 공무원(이하 “공무원” 이라 한다)</u> ----- ----- -----

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

가. ~ 자. (생략)

2. · 3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<신설>

4. · 5. (생략)

제3조(제안의 종류) ① 제안은 시민제안, 아이디어제안, 실시제안, 공모 제안으로 구분한다.

② “시민제안”이란 시민이 시

-----.
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
4. “아이디어제안”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.

5. “실시제안”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.

6. “공모제안”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

7. · 8. (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

<삭제>

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

③ “아이디어제안”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.

④ “실시제안”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.

⑤ “공모제안”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.

제4조(제안의 제출) 시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수시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실시제안의 경우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)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

제4조(제안의 제출)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자와 -----
-----.

-----.

제6조(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) -----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자와

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,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·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17조(상여금 지급) ① ~ ④ (생략)

⑤ 채택제안의 제안자인 시민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-----.

제17조(상여금 지급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서명 또는 인)

○ 주 소 : _____

○ 전 화 번 호 : _____

조례(안) 항목별 내용	찬성여부		의견(사유)	기타 참고사항
	찬성	반대		